

#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박 종 호

충북 중재위원, 청주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또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9월 28일 충북 청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종호 위원(충북 중재위원, 청주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이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충북 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수용 중재부장(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I. 머리말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제도이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이와 같이 언론중재제도는 언론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구제제도이다.

도청구권(사실은 반론보도청구권임)이 도입되고 3개월 뒤인 1981년 3월 31일에 언론중재위원회가 가동되었다. 그 후 언론기본법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탄생동기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일자 폐지되었으나 그동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 왔던 반론권 제도는 1987년 11월 28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일부 흡수되었으며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종합유선방송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1995년 12월 31일 정간물법의 개정을 통해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정식 명칭이 채택되었으며, 2005년 1월 27일 언론중재법이 제정·공포되어 그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II. 언론중재제도

### 1. 탄생과 변천

언론중재제도는 1980년 12월 31일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 태동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정정보

### 2. 주요내용 및 특징

1)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명확화

## 주제논문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하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그만큼 언론의 공적(사회적)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철학적 기초이기도 하다.

## 2)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공정성, 자율성 등을 갖춘 조직으로서 전면에서 언론중재제도의 이념을 구현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3)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의 다양화 도모

언론중재제도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인격권 침해 정지 및 침해예방·관련물 폐기청구, 명예회복청구, 시정권고청구, 선거기사심의 등으로 나누어진다.

## ① 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는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 통신 및 인터넷 신문의 보도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반론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는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보도 내용과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추후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에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

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그 후 형사절차를 통해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그 결과 사실을 후속보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것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는 언론사나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 등에 제소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에는 일반 쟁송사건과 같이 언론사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요구된다.

## ⑤ 인격권 보장 청구

언론중재법 제5조에서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⑥ 명예회복처분청구

명예회복처분청구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사과광고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당한 처분을 취해줄 것을 청하는 것을 말한다.

## ⑦ 시정권고청구

언론 보도 내용이 옳지 못하거나 잘못되거나 국익, 공익, 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4) 선거기사 심의

언론중재제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일전 120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 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불공정, 비형평, 편파성, 반공익성, 정치적 개입 등의 선거보도에 대하여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게재 또는 권고·주의·경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반론보도청구 회부사건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5) 고충처리인제도 설치

언론중재법 제6조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ombudsman(ombudzman)제도의 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충처리인 제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3. 언론조정 절차

언론중재제도는 법익에 관한 다툼을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가 까다롭고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며 분쟁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송에 갈음, 중재와 조정과 같은 분쟁 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를 활용한 제도이다.

#### 1) 중재부

조정 및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현재 각 중재부마다 현직 부장판사가 중재부장으로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2) 조정신청 및 조정기관

조정신청은 피해자 또는 언론사가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조정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조정신청이 있으면 중재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3) 조정대리인

언론중재제도는 조정대리인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 조정기일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또는 조정대리인이 출석한다. 조정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 5) 증거조사

## 주제논문

중재부장은 필요한 경우 조정사건의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서증조사, 검증, 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참고인의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중재심리에서의 증거조사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증거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

### Ⅲ. 언론중재위원회

#### 1. 설치배경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는 만큼 그에 비례한 공적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장치가 언론중재위원회 설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근거해 1981년 3월 31일 설립된 후 사반세기인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 2. 성격 및 기능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피해의 조정·중재, 손해배상 등의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독립된 기관으로서 설치되었다.

#### 3. 기구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총회, 운영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 중재부, 사무처 등의 기구를 두고

있다. 중재부는 중재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전국 16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중재부는 조정 내지 중재신청 건에 대하여 정정, 반론,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처는 2본부 1센터 9팀과 10개의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 Ⅳ. 언론중재위원회의 미래과제

#### 1. 중립성·독립성 및 기능강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으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에 대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소송절차보다는 조정과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및 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i)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현재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ii)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원 지위를 상실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게 하며, iii) 중재부의 기구를 확대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 등 언론분쟁전반에 대하여 법원제소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인지도 향상

언론중재위원회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상황을 알리는 안내지

를 비치하는 일, 도나 시·군 회보에 게재하여 국민이 알게 하는 일, 신문이나 방송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분쟁사건 및 결정 내용'을 보도케 하는 일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3. 성숙한 판단력의 구비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은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더구나 언론피해는 i)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ii) 동시다발적이며(한 언론사가 보도하면 다른 언론사도 연달아 보도), iii) 오보든 정보든 그 결과와 파급효과는 동일하고, iv) 법적보상제도가 비현실적이며(보상액 낮게 책정), v) 언론사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고(연예인과 정치인에게는 치명적), vi) 고위관료를 비롯해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언론 피해에 대해 취약하며, vii) 일반적으로 국민이나 독자들은 언론 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 즉 성숙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언론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법을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분쟁대상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정과 중재를 해야 한다.

### 4. 접근성 용이

언론중재위원회는 독자, 국민, 시민단체 등을 비롯, 이용 필요자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민간 사회단체들이 자리한 곳이나 대학가 그리고 공원근처, 지방자치단체 정문 앞 등이 이상적인 장소다. 또한

신청방법도 단순화 할 것이 요구된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방법과 쟁을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 5. 중재위원의 전문성 확보

중재위원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을 임무로 하는 만큼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에 대한 기초지식, 언론보도 기사로서의 가치와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언론사의 사명, 국민의 기본권, 시비를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판단력,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 신념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6. 신청 층의 확대

과거 조정신청이 언론사,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의 기관 내지 단체의 청구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일반인의 신청이 미미하다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만큼 언론에 대한 국민권리 보호의 창구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계도함으로써 신청 층을 두텁게 하여야 한다.

### V. 맺음말

언론중재위원회는 중립성·독립성 및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수요자 및 국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 토 론

한다. 또한 누구보다 성숙한 판단력을 구비해야 하고, 수요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전문성을 갖대로 하여 중재위원이 선정돼야 한다. 언론사 및 공공기관의 이용 층을 일반인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모든 정부기관이 그러하듯, 언론중

재위원회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나 공공기관만이 사용하는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연기자(주역)로 하는 국민의 무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의 법익보호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토 론

사 회 어 수 용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정연은(충북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된 지 25년이 되었다는 것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 그만큼 홍보가 미비하다는 뜻이다. 위원회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선관위는 최근 일련의 선거를 치루면서 ‘낮잠자는 선관위’, ‘얼빠진 공무원’ 등 몇몇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사사건건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신청 할 만한 기사에 대해서는 거꾸로 상대방에 연락해서 조정신청을 권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협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성규(중부매일 대표이사) :** 언론중재위원회의 사회적 순기능을 인정하며 제도적 필요성 역시 공감한다. 그러나 언론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기능은 최소화하여야 한

다. 언론 자유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은 정보제공과 비평이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필수적인 역할이다. 시각의 충돌로 인해 분쟁이 빚어졌을 경우 당사자들의 화해와 조정이 가장 중요한데 언론중재위원회가 개입해서 이를 조정하려 한다면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기사를 검열하는 것은 언론자유 측면에서 매우 위협적인 발상이다.

**안종욱(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에 대해 자체 검열 내지 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자유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중재제도 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겠으나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우선 제도의 존재부터

알리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 또한 지역 언론은 중앙 언론과 달리 지역 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진실보도를 담아내려는데 힘써야 한다.

**강태재(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 :** 중재위원의 역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인사들로 중재위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중재위원회가 중재위원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북지역의 경우 조정건수가 적은 것은 언론의 피해구제가 신속해서라기보다는 충북 지역 사람들의 기질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즉 예부터 양반고을이라 하여 면전에서 체면을 구기는 일을 꺼리는 경향이 강한 대신 투서형식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일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 또한 충북 지역 언론 역시 상대적 우월감이 강해 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보복 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즉 현실적으로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중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건수가 적다는 뜻이다.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중재위원이 법조, 학계, 언론계 출신 위주로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역 사정에 능통한 지역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일반인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도 더욱 많아져야 한다. 언론중재의 목적이 조정과 합의도출이라는 측면에서 위원 인선시 이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박민순(청주 MBC 보도편집국장) :** 백 건의 사건 중 아흔아홉 건의 잘하는 사건보다는 한 건의 잘못된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화하는 것이 한국 기자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국민의 세금을 받아 일하는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언론이 비리나 부정부패 관련 보도를 하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딱지만 건다는 식으로 향의를 한다. 언론이 무조건 딱지건다는 생각 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언론은 사회가 발전하고 외연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이다. 언론의 오보대응은 제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사회가 성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물론 사후구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제도는 지극히 제한적인 권한을 갖는 모습이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홍보하고 강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본다.

**김영일(새충청일보 대표이사) :** 언론중재위원회 홍보를 가장 열심히 해주는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사이다. 일반인들이 향의를 해오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정보도하기 때문에 조정건수가 적은 것이다. 또한 향의를 해 온 사람과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로 가라고 안내한다.

중재위원 중에 언론사 출신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 충북 중재부에는 언론사 출신 위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오히려 언론조정과 중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언론사 출신이 있을 경우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이라

## 토 론

할지라도 언론사 출신 선배 중재위원이 조정을 권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기수(전 중재위원) :** 중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싸움을 말리는 기관이다. 언론사 출신 위원이 없다면 공정한 중재를 하는데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어떤 분들은 언론사 출신 중재위원이기 때문에 언론사 일방을 편들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언론사 출신 위원은 그러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조정에 임하기 때문에 더욱 가치중립적인 자세로 사안에 접근한다.

**이상열(충북관광협회 회장) :**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잘 몰랐으나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 각 언론의 북한 핵 보유 오보 사건을 보면서 오보가 터지기 전에 그 기사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체크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여실히 느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유태(청주 여성의 전화 대표) :** 충북중재부에 여성위원이 없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전체적인 토론 내용의 흐름상 언론계보다는 시민단체 쪽의 얘기가 더 맞다고 본다. 조정과 중재는 전문성을 따지기에 앞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소비자들이 중재위원으로 활동할 때 더욱 합의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위원회의 위원이 반드시 5명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구성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한성(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의장) :** 언론중재위원으로 누가 들어가 있던지 간에 중립성을 담보로 활동하면 된다고 본다. 기업들이 노동자들 때문에 기업활동 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노동자에 불리한 부정적인 보도를 접할 때는 언론이 중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회가 삭막해진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가기 전에 언론사와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타협과 양보를 통해 절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김춘길(충북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지역 중재부의 중재위원이 중앙 행정기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의 편집국장 및 고충처리인들과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언론피해구제의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면 훌륭한 오보대응시스템이 구축되리라 본다.

**조성훈(동양일보 대표이사) :** 자칫하면 언론은 피해만 주는 기관으로 낙인찍힐지도 모르겠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를 견제하는 기관으로 인식될 우려도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의 견제기관이 아니라 언론으로부터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어수단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위원회가 기자를 교육시키고 또 일반인을 상대로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해 홍보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이는 언론사에게도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